

## 2022년도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지원사업

# 기업맞춤형 현장훈련(S-OJT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사)전북산학융합원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「기업맞춤형 현장훈련(S-OJT)」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5월 10일

(사)전북산학융합원장

|

### 사업개요

#### ◆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사업이란?

중소기업이 입사 후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제 근무상황(근무시간 중 실제 생산 시설, 장비활용)하에서 개별 기업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(훈련프로그램, 내용전문가, 훈련비용 등)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

### 1. 사업 목적

- 인력부족으로 근로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

### 2. 관련 근거

- 「고용보험법」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 개발의 촉진)제1항제13호·제145조(권한의 위임 등)제3항제17호
- 「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호)

### 3. 선정규모 : S-OJT(일반) 40개, S-OJT(특화) 30개

※ 기업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

1. 지원대상
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「우선지원 대상기업」 으로서,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

2. 지원요건

- (고용보험 요건)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(신청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)
- (업종 요건)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1.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2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
  - 가.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  - 나. 비영리사업자. 다만,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
  - 다.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  - 라. 숙박업. 다만,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.
  - 마.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바.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사.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아. 협회 및 단체.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.
  - 자.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
  - 차.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
  - 카.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

- (훈련대상 직무) 제품의 제조·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한 직무이어야 하며, 경영지원업무를 비롯한 현장훈련에 부적합직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적합직무	부적합직무	불명확한 경우
설계, 소프트웨어 개발, 인쇄·출판 등	세무, 회계, 외국어, 경비, 컨설팅, 보건·의료, 법정 의무훈련 등	현장 실사 후 외부 전문가 의견에 따라 판단 (품질관리, 생산관리 등)

※ 신규 직종 관련 사항은 현장훈련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
## ○ 기타 참여 제한

-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<sup>1)</sup>, 산재다발 사업장<sup>2)</sup>이 아닐 것

### 1)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(근로기준법 제43조의 2)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[정보공개]→[체불사업주 명단공개]에서 확인

### 2) 산재다발 사업장(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)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[뉴스·소식]→[공지사항]→[공고]→“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” 첨부물 확인

- 일학습병행 및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는 참여 제한

\* 사업종료(훈련수료) 또는 해당 사업 참여자 외 근로자는 참여 가능

- (우대요건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등 기존 훈련사업의 진입요건 미 충족 사유로 훈련사업 참여 이력(최근 1년 기준)이 없는 기업은 기업 선정 시 우대

- (기존 참여 기업) 최근 2년('20년~'21년) 이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이 기개발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신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

- 단, 금년도 사업신청서(사업수행계획서 포함) 제출 및 약정체결 (공단 ⇔ 기업) 필수

## III

## 지원유형

### 1. 참여유형

- 센터협약기업 :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, 훈련프로그램 개발, 훈련실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걸쳐 지원받는 기업

- **자율참여기업** :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의 지원없이 사업신청, 훈련 프로그램 개발, 훈련 실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걸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업('19년 이전 참여 기업, 아우스빌등 참여기업 등)

※ 프로그램개발, 훈련교사 수당 등 별도 비용지원 없이, 순훈련비(NCS단가 기준)만 지원

## 2. 훈련유형

- **일반훈련** :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 훈련 및 노하우 전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체계적 현장훈련(S-OJT)을 지원하는 훈련
- **특화훈련** : 훈련강사, 훈련장소, 훈련방식 등 기존 훈련사업의 정형화된 형식제약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문제해결 중심의 훈련으로 규제샌드박스\* 형태로 운영

\* 규제샌드박스 : 새로운 제품,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, 유예시키는 제도

### 〈일반훈련과 특화훈련 비교〉

구분	일반훈련	특화훈련
목표	· 근로자 숙련도 향상	· 현장문제 해결 및 개선
프로그램 개발	· PM주도형 · 작업절차(직무) 분석→현장교사 요구조사→예비훈련생 요구조사→프로그램개발 · 개발기간 : 평균 1개월	· 훈련참여자 주도형 · 현장분석→훈련참여자 요구조사→모델 커스트마이징→ 훈련 및 컨설팅 방향 설정→(훈련목표(과제)선정→훈련실시) · 개발기간 : 2~3주 * 특화센터 모델 개발 1~2개월 소요
훈련운영	· 훈련교사 주도형 · 강의 및 코칭 · 암묵지의 문서화를 통한 노하우 전수 · PBL방식을 활용하나 단순 과제 수행 (교육공학의 교수법 중 하나)	· 프로젝트 수행 방식 - 경영 목표와 연결된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단계적 수행 및 현장 개선 컨설팅 실시 · 플립러닝 방식 허용 : 사전 교육 (이러닝, 집체, 동영상 교육) 제공 · 특화활동 : 현장훈련을 제외한 집체훈련 등을 기업 간 공동으로 실시
훈련시간	· 강의 및 코칭 시간 - 4~60시간 · 훈련시간표 활용, 출결관리	· 1년 이내 · 훈련시간표 없음 - 학습근로자 별 상이 : 프로젝트 내 수행 업무에 따라 변동 - 컨설팅 수행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 시간을 훈련시간으로 설정

## 1.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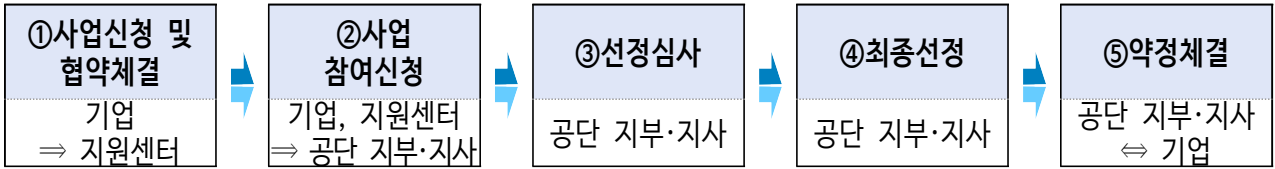
- 특화훈련의 경우, 프로그램개발~훈련실시까지 과정당 평균 800만원  
한도 내에서 지원

항 목	지원내용	
	일반훈련	특화훈련
훈련과정 개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간 최대 5개 과정 지원(특화훈련 포함 최대 7개) 단, 기업당 년 최대 3개 과정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훈련시간 : 4~60시간</li> <li>• 개발비 : 과정당 최대 23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훈련기간 : 최대 1년 이내</li> <li>• 개발비 : 과정당 최대 90만원</li> </ul>
사내훈련교사 역량향상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(온라인 교육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
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NCS단가 x 시간 x 인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료비 등 훈련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실비 지원(센터와 협의 필수)</li> </ul>
훈련 교사 수당	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소 30만원 ~ 최대 50만원(월 훈련 시간에 따라 상이, 과정당 최대 3회차 지원)</li> </ul>
	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간당 최대 10만원 (회차당 200만원, 기업당 400만원 한도)</li> <li>• 시간당 최대 20만원 (과정당 600만원 한도)</li> </ul>
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지원기관(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)의 컨설팅 및 행정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지원기관이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</li> <li>- 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 컨설팅(신규 기업) 및 성과컨설팅(2~3년차 기업)</li> </ul> </li> </ul>	

## 2. 지원기간 : 약정일로부터 '22. 12. 31까지

- 매년 약정 체결을 하여 지원기간 연장(최대 3년까지)

## &lt;전체 사업추진 절차&gt;



## 1. 신청·접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'22. 8. 31.까지 (상시 접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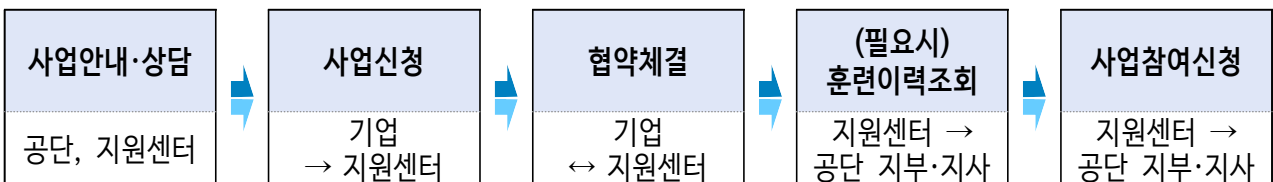
※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

연 번	구 분	제 출 서 류	서 식
1	필 수	참여신청서	붙 임 3
2		사업수행계획서	붙 임 4
3		참여신청기업 자가확인서	붙 임 5
4		사업자등록증 사본(최근 3개월 이내)	
5	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	
6		사내훈련교사 증빙서류	
7	선 택 (해당시)	독자적 기술력 보유 증빙서류	
8		스마트팩토리 구축확인서류	
9		R&D 정부지원사업 증빙서류	
10		업종전환 정부지원사업 증빙서류	
11		일학습병행 아우스빌동 약정서	
12		한독상의 추천서	

○ 접수처 :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

## &lt; 사업 신청 절차 &gt;



## 2. 협약 체결

- 수행주체 :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
- 수행업무 : 사업신청서 검토, 참여 신청 행정절차 지원, 약정체결 (지원센터 ↔ 기업) 및 현장훈련 필요직무 진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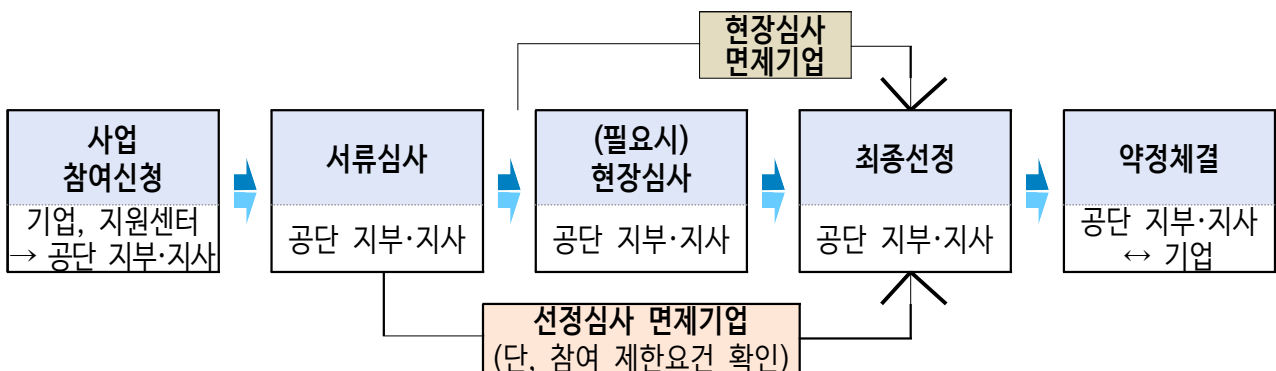
## 3. 사업 참여 신청

- 신청주체 :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(⇒ 기업 소재 관할 공단 지부·지사)
- 제출서류

연 번	구 분	제 출 서 류	서 식
1	필 수	기업신청서류 일체	
2		협약서	붙 임 6
3	선 택 (해당시)	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컨설팅 결과보고서	

## 4. 선정심사

- 심사주체 : 관할 공단 지부·지사
- 심사시기 : 상시
- 주요 심사내용 : 경영진 의지, 기업 여건 적절성(훈련근로자 대우 등), 훈련 준비 상황(직무 적합성, 훈련 인원의 적정성, 훈련인프라 등)
- 심사 절차



① 서류심사 :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기반 기업역량, 지원제한  
업종 해당 여부, 직무의 적정성, 시설·장비 등 심사 <붙임7> 참고

- 경영진 인터뷰(유선 또는 비대면 플랫폼 활용) 필수

② 현장심사(필요시) :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후 추가  
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현장심사 실시

③ 최종 선정 여부 통보 : 공단 지부·지사⇒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

※ 지원센터는 최종 선정 결과를 협약기업에 개별 통보

○ 선정심사 특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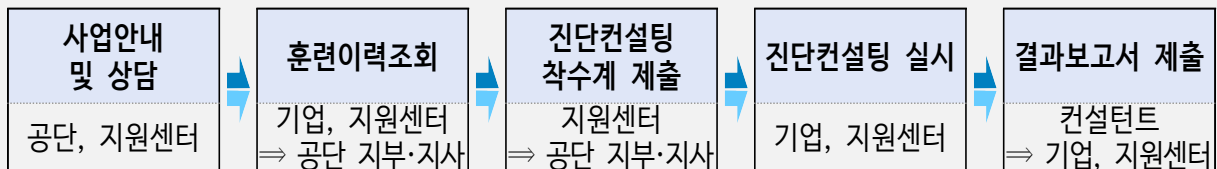
- 훈련 조기 촉진을 위하여 특정기업의 경우 선정심사 특례를 적용하여 선정심사\* 또는 현장심사 면제

\* 선정심사 면제기업의 경우 결격 사유(산재다발, 임금체불 등) 만 확인 후 선정 및 약정 체결

① 전년도('21년)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 기업 : 선정심사 면제

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컨설팅 참여 기업\* : 선정심사 면제

\* '19~'21년 동안 사업주 자체훈련(기업맞춤형 현장훈련, 일학습병행 포함) 미실시 기업, NCS 컨설팅,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지원사업(HRD분야) 미 참여 기업



③ 아우스빌등 참여 기업 : 아우스빌등 약정서 및 한독상의 추천서 제출 시 현장심사 면제

④ 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, R&D, 업종전환기업 : 정부지원 약정서 또는 사업종료 보고서 제출 시 현장심사 면제

**〈참고〉 스마트팩토리 구축(예정) 지원 정부지원사업**

-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
-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
- 데이터분석 기반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
-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(도입기업만 해당)
- 스마트화 역량강화(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,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)
-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(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)
-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 등

**5. 약정체결**

○ 체결주체 : 공단 지부·지사(⇔ 참여기업) <붙임8> 참고

○ 약정기간 : 약정체결일 ~ '22. 12. 31까지

○ 주요내용 : 공단 지원내용, 기업 준수사항, 훈련비 반환 사항 등

## V

## 기타 주의사항

- 접수기간은 '22년도 사업목표(일반 40개, 특화 30개 기업) 조기 달성 시, 접수기간 만료 전에도 마감될 수 있음
- 약정기간 만료 전에도 프로그램개발 검수, 훈련 모니터링 또는 지도점검 시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\*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해지 또는 지원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

\* 현장훈련 직무 부적합,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이 적발되는 경우 등

-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사업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장심사 결과 또는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가 회차 훈련 실시 및 추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,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